

이슈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가결시키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시사 들어가는 글

-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 보장,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디지털 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1>}이 2018년 9월 12일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가결된 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지침안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사 배경

1)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토론회에서 밝힌 이후 2015년 5월 6일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유럽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중점 전략(pillars)과 16개의 세부 과제(initiatives)로 이루어진 유럽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2>}

<1> 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2 September 2018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0593 – C8-0383/2016 – 2016/0280(COD))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

2)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

이러한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유럽 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6년 3월 유럽 위원회 역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및 파노마라의 자유 예외 인정에 관한 공공 협의를 개시하여 2016년 9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 최종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는 2017년 3월 유럽 위원회가 제출했던 지침안을 일부 수정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대신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신하여 언론출판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7년 6월 유럽 의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언론출판물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경우 라이선스 거래를 더 복잡하게 하며 언론출판사의 수입 증가가 저작자의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EU 차원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보고서^{<3>}

역시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2017년 10월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의 삼자 협상에서^{<4>} 유럽 의회의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의 악셀 보스(Axel Voss) 의원은 통신사(news agency)까지 저작인접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외에 ‘유럽연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상 대여권 및 대출권과 배포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지침안을 2018년 3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정안이 발표되자 2018년 5월 유럽의 169개 대학과 백여 명의 판사들은 수정안이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수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는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3>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Press Publishers and Authors and Performers in the Copyright Directive

<4> 통상적으로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각각 해당 법안에 대하여 검토함. 해당 법안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으면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간의 삼자 협상이 개시되며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지침안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한 지침안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호되고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밈(meme)^{<5>}, 패러디와 비평 등의 제작과 공유를 위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2018년 7월 5일 유럽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결 이후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는 부결된 지침안에 대해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감안하여 언론출판사의 권리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적용 대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여 소규모 플랫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작권 비침해 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수정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이하 ‘동 지침안’)은 2018년 9월 12일 총 751표 중 찬성 436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동 지침안의 주요 내용

1) 제11조: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6>}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디지털 사용에 대하여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규정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해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 이용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적·비상업적 적법한 사용이 금지되는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재미있는 캡션을 추가하여 온라인상 게재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savethememe.net>을 통하여 2017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6> 정보사회서비스란 대가를 위하여, 원격으로, 전자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EU) 2015/15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September 2015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제1조 제1항.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해당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이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저작자 및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저작자 및 권리자가 해당 언론출판물과 별개로 자신의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개별 단어들(individual words)”을 덧붙여 하이퍼링크를 단순히 제공하기만 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부결된 지침안이 하이퍼링크에는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발행 후 5년간 존속하는데 부결된 지침안에서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것에 비하여 보호기간이 줄었다.

또한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용에 대하여 언론출판사가 수취한 추가 수입에 대하여 저작자가 적절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물과 이용이나 소비 증가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7>}

2) 제13조: 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적용 대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동 지침안 제13조가 적용되는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영리 목적으로 최적화하여 선전하는 상당한 분량의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7> 2014년 11월 3일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실연자들이 분배받는 수익의 22배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스트리밍 수익과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와 스트리밍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7월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의 필요성을 요지로 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29일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지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7년 6월 UNESCO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협상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을 채택하였다.

또한 소규모 및 중규모의 기업의 정의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8> 부속서상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초소형기업 및 소형 기업<9>과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교육 또는 과학 자료보관소와 같이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동 지침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공중에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사적 사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주된 기능이 유체물의 온라인 소매시장 역시 동 지침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부결된 지침안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를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최적화한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2)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무단 제공 방지 의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을 공중전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공정하고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중전달을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업로드하는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동 지침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는 저작물 등이 무단으로 해당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유럽 위원회가 애초에 제안하였던 지침안의 경우 효과적인 콘텐츠 인식 기술의 사용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부결된 지침안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균형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8>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9>

유형	직원수(단위: 명)	매출(단위: 백만 유로) 또는	대차대조(단위: 백만 유로)
중형	< 250	≤ € 50 m	≤ € 43 m
소형	< 50	≤ € 10 m	≤ € 10 m
초소형	< 10	≤ € 2 m	≤ € 2 m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한 것과 비교된다.<10> 그러나 저작물 등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협력이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비롯한 저작물 등의 비침해적 이용가능성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 이용자의 신원확인이나 개인 정보 처리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용자의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상기의 협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콘텐츠 삭제를 야기한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이의 신청은 불합리한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람에게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용자가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사법 기관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 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모범관행의 마련

동 지침의 발효일에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은 동 지침상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의 운용과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모범 관행을 마련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체계화해야 하며 모범 관행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절한지 여부와 콘텐츠 자동 차단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제3조: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 허용

연구기관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등을 과학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하기 위하여 복제 및 발췌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시설 및

<10> 한편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가 합의한 지침안 제13조는 (a)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구체적 저작물 등의 자사의 서비스 상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였고 권리자가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고, 그리고 (b)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통지 시 해당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서비스제공자가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통해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a)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규모; (b) 서비스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 등의 양 및 유형; (c) 해당 조치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 기술발전의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문화유산기관 역시 동조에 따른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되는데 다만 해당 기관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이 과학 연구 결과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및 추출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4) 제5조 및 제7조: 문화유산기관의 저작물 이용 허용

문화유산기관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영구 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복제본을 어느 매체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다. 소정의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문화유산기관의 영구 소장품인 절판된 저작물 등을 해당 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화, 배포,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해당 분야 권리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5) 제14조: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 보장

회원국은 저작자 및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 및 실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부터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개별적 기여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 방식, 직접·간접 수익 및 지급받을 보상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며 정확하고 종합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유사한 구조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 및 실연자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한 대표 단체가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을 위하여 체결했던 계약에 따라 받았던 보상이 이용을 통해 후속적으로 발생한 관련 직접 또는 간접 수익 및 혜택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적은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 지침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

1) 링크세 도입에 대한 비판

동 지침안 제11조에 찬성하는 입장은 소위 링크세(link tax)의 도입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뉴스 제공 웹 사이트가 뉴스를 무단 전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으며 하이퍼링크를 동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조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언론출판사가 자유롭게 언론출판물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출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사의 언론출판물에 비판적인 소비자는 승인하지 않고 우호적인 논평을 하는 소비자만 승인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언론출판사가 뉴스 제공 웹 사이트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형 언론출판사에 비하여 낮은 사용료를 제안할 수 없는 소규모 언론출판사의 경우 불리하다.

게다가 제11조가 타깃으로 하는 대상이 구글 뉴스(Google News)와 같은 대형 뉴스 제공 웹 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11조가 개인 이용자에 의한 사적·비상업적 적법한 저작물 등의 사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업적 플랫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뉴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블로그나 RSS, 또는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상업적 플랫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울러 개별 단어들을 덧붙여 하이퍼링크만을 제공하는 행위의 허용과 관련해서도 허용되는 최대 단어 수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결국 각 회원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링크세를 이미 도입한 독일과 스페인^{<11>}에서의 운용 상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언론출판사에게 저작권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 언론출판사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언론출판사에 전송권을 인정한^{<12>} 개정 저작권법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독일 언론출판사가 구글을 비롯한 포털 업체에 사용료를 청구한 것은 아니며 일부 언론출판사들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구글이 구글 뉴스에서 뉴스들을 삭제하고 언론출판사가 새롭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뉴스 사이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웹 트래픽 감소라는 타격을 입은 언론출판사들은 결국 구글의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13>} 스페인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하게 링크세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0월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글은 구글 뉴스 스페인어 사이트를 폐쇄함에 따라 스페인 뉴스언론사 사이트의 전체 트래픽이 15% 감소하였다. 이처럼 구글이 선제적으로 구글 뉴스 스페인어 사이트를 폐쇄하자 급기야 스페인신문협회는 개정 저작권법 적용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이 스페인에서처럼 유럽 전역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구글

<11> 프랑스의 경우에도 언론출판사 및 언론기관에게 저작권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의견이 표명된 바 없어 언론기관에 대한 이러한 재산권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2018년 5월 17일에 폐기되었다.

<12>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발간 후 1년간 존속하며 몇몇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3> 2014년 독일 정부와 연립여당은 개정 저작권법 후속 조치를 위한 검토를 하였으며 2014년 12월 구글세 폐지를 제안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구글 뉴스 홈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의 콘텐츠 필터링 의무

동 지침안 제13조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적절할 사용료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업로드 필터링 의무를 부가하고 일반 공중의 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동 지침안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는 않고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와 관리자가 저작권 침해 금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결국 유튜브의 Content ID^{<14>}와 유사한 필터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글이 Content ID의 개발을 위해 6000만 달러를 들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에게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 개발 비용은 부담이 되며 게다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바흐 음악을 연주한 영국 피아니스트의 녹음이나 10시간 분량의 백색 소음 영상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필터링된 사례가 보여주듯이 Content ID의 필터링 방식도 비침해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마치는 글

이번이 가결된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어 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는 빠르면 2019년 1월, 늦으면 2019년 3월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최종 지침안을 승인하더라도 모든 EU 회원국들에 의한 국내법 이행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 지침안에 대해 제기되는 반대 의견들이 최종 지침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의 일환으로 거주국에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14> Content ID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부터 동영상 속의 음원까지 저작권자가 아닌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스캔하여 이에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물이 감지되는 경우 Content ID는 이 사실을 저작권자에 고지하고 저작권자는 해당 동영상을 내리거나 해당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저작물 사용료 대신 그 광고 수익을 받는다.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관한 규칙^{<15>}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16>}이 2018년 2월 6일과 2018년 2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의 최종 모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자료

<https://bit.ly/2QlUmYt>

<https://bit.ly/2CYkUfL>

<https://bit.ly/2Mp2Af0>

<https://tcrn.ch/2xhdezM>

<https://bit.ly/2D4EiYG>

<https://reut.rs/2JwiDXH>

<https://bit.ly/2xmVxB>

<https://bit.ly/2NBxy8G>

<https://bit.ly/2NfybW6>

<15> Regulation (EU) 2017/11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16> Regulation (EU) 2018/3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February 2018 on addressing unjustified geo-blocking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customers'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establish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2006/2004 and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IP 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 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영화 ‘코블러(The Cobbler)’의 제작사인 원고는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IP 주소가 해당 영화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7년 1월 4일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는 저작권 침해자라기보다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설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8년 8월 27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와 저작권 기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1> Cobbler Nevada, LLC v. Thomas Gonzales, 2017 WL 44948 (D. Or. Jan. 4, 2017).

<2> Cobbler Nevada, LLC v. Thomas Gonzales, No. 17-35041 (9th Cir. Aug. 27, 2018).

-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음.
-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기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기여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
 - 저작권 기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조력하는 행위에 관여해야 함.
 - 적법한 비침해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단순히 배포했다는 점만으로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비침해 목적 또는 상업적으로 상당한 비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포라고 할 수 없음.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기여 침해가 인정될 수는 없음. 개인 인터넷 가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인터넷 접속을 공유하는 인터넷 서비스 구매자나 가입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이웃의 접속을 차단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구매자에게 위험을 야기함.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없이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만을 증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3>}
-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Venice Pl. LLC v. Jonathan Dutczak, et al., C17-991 TSZ(W.D. Wash. Nov. 3, 2017). 여기에서 ‘Once Upon a Time in Venice’라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를 상대로 1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불법 저작물에 사용된 IP 주소를 근거로 제출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한명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남편이 해당 영화를 불법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함. 2017년 11월 3일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https://bit.ly/2Q4bMsg>

<https://bit.ly/2NNSW7r>

<http://bit.ly/2yZ3E3F>

독일

**법원, 스포츠카 포르쉐 설계자의 상속자는 포르쉐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스포츠카 포르쉐의 원조 모델인 911의 설계자의 상속자는 이후의 모델들이 911의 창작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포르쉐는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설계자인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승계인인 자신에게 포르쉐는 공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후의 모델들은 저작물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기각함.

☞ 사실 관계

- 에어빈 프란츠 코멘다(Erwin Franz Komenda)는 1931년부터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스포츠카 제조사인 포르쉐 주식회사(Porsche AG)의 책임디자이너이면서 차체제작부서의 책임자였음.
- 코멘다는 포르쉐에서 책임디자이너와 차체제작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인 폴크스바겐(VW AG)의 ‘딱정벌레 자동차’(Volkswagen Käfer(독), Volkswagen beetle(영))의 개발에 참여함.^{<1>} 그 후 이 자동차를 기본으로 한 최초의 스포츠카인 모델 356이 개발되었고 이어서 후속 모델인 911이 개발됨. 코멘다는 이들 스포츠카의 개발에 모두 참여함.
- 그런데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포르쉐의 대표 모델인 911을 누가 설계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됨.
- 코멘다의 권리승계인인 딸(이하 ‘원고’)은 911 모델의 저작권은 자신의 부친에게 있고 이후의 스포츠카 모델들(특히 997과 991)은 911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부친 사망 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포르쉐(이하 ‘피고’)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함.

<1> 최초의 스포츠카인 포르쉐 모델 356이 개발되던 시기(1948년)에 포르쉐와 볼크스바겐은 서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이면서 협력관계에 있었음. 공동으로 개발한 스포츠카가 모델 914임. 이후 포르쉐는 2008년 주식회사 폴크스바겐을 인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반대로 2012년 폴크스바겐에 인수됨.

- 피고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포르쉐 911 모델과 이후의 997, 991 모델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포르쉐가 자신에게 이천만 유로를 지급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포르쉐 모델 911과 이전 모델인 356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의 부친에게 있고, 그의 창작성이 이후의 모델에 그대로 수용되었으므로 이후의 모델은 911 모델의 복제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 개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포르쉐는 이러한 스포츠카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부친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저작권법 제32a조에 의해서 권리승계인으로서 자신은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저작자는 이용권의 설정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의 대가로 계약상 약정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32a조).
- 이에 대해서 피고는 911 이후의 포르쉐 모델들은 회사 창업자(Ferdinand Alexander Porsche)의 후계자가 설계했다고 항변함.

지방법원의 판결

- 스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 법원은 먼저 모델 356과 911의 설계가 응용미술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4호, 제2항)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립함.
- 하지만 모델 911의 이후 모델인 997과 991은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되고 이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4조 1항).
- 또한 법원은 모델 997과 991은 모델 911을 복제(저작권법 제16조 제1항)하지도 않았고 2차적 저작물로 개작(저작권법 제23조)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함.
 - 저작물의 개작물은 오직 개작된 저작물 저작자의 사전동의를 있어야만 공표되거나 이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3조).

<2> LG Stuttgart, Urteil vom 26. 07. 2018 - 17 O 1324/17.

- 법원은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911 모델의 창작성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좁게 보호된다고 함. 포르쉐 911의 후속 모델에서 차체의 형태가 현저하게 발전된 점을 고려하면 911 모델의 창작성의 보호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러한 근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공정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포르쉐 911 이후의 모델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저작물의 개작 또는 복제가 아니므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권리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 하지만 이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첫째, 법원은 포르쉐 911 모델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음. 둘째, 소위 ‘베스트셀러 규정’(저작권법 제32a조)에 의해서 저작권의 이용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을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저작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음.
- 한편, 이 판결로 인하여 기업이 설계자나 이와 유사한 창작적 활동을 하는 직원과의 계약관계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x2NdEd>

<https://bit.ly/2x1UJPY>

<https://bit.ly/2P0itew>

호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호주의 정보통신부가 2018년 8월 7일 발표한 보고서 “2018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호주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 및 증가로 인해 호주 국민의 콘텐츠 소비 행동이 온라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소 개요

- 2018년 8월 7일 호주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2018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설문 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8)”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조사(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survey)는 2015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올해 조사는 “Indigenous Professional Services 社(이하 ‘IPS 社’)”에 의해 수행되었음.
-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호주 국민들의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 경향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태도 등을 이해 및 분석하고자 함.

시소 주요 내용

- 동 설문 조사는 2,4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호주 국민들의 숫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국민들은 특히 2015년 이후에 다운로드를 통한 방식 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감소한 반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음악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전년에 비해 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전년 대비 5% 상승하였음.
 - TV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2%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무려 9%나 상승하였음.
 - 영화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5%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9% 상승하였음.
 -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6%,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1% 감소하였음.
- 올해 조사된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소비(lawfully-consumed digital content) 비율은 67%로 이는 작년 6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15년 처음 조사에서의 57%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등 4가지 콘텐츠 유형 모두에서 순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콘텐츠의 소비가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 호주 국민들의 콘텐츠에 대한 분기 별 디지털 구매 및 구독에 대한 평균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호주 국민들은 앞으로도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번 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구독(Subscriptions) 서비스를 통해 분기 당 평균 11.17달러, 디지털 구매(Digital purchases) 서비스를 통해 분기 당 평균 6.6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7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한 15.90달러,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한 8.10달러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 이와 달리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2017년에 비해 올해 조사 결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분기당 평균 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음.
 - TV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8.30달러에서 올해 10.88달러,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3.60달러에서 올해 4.00달러를 분기 별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화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8.60달러에서 올해 11.00달러, 디지털 구매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4.50달러에서 올해 6.30달러를 분기 별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한 지출만 조사되었는데 2017년 8.80달러에서 올해는 10.31달러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분기당 평균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몇 년 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품질, 접근 편의성, 가격 등이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신 합법적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차별 요소로 조사되었음.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사이트 차단(Site-blocking)이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평가

-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은 호주의 국민들이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legal streaming services)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불법적인 콘텐츠의 소비 감소 및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수단에 접근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평가임.
- 또한 이는 바로 얼마 전인 2018년 8월 2일 영국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Music Report”의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

* 참고 자료

<https://bit.ly/2DbI16q>

<https://zd.net/2pdUz3v>

<https://bit.ly/2MGGvJ8>

<1> 유현우, “[영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음악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동향 2018」 제13호, 2018년.

일본

저작권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등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성립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는 미국의 탈퇴로 보류된 TPP 12 정비법의 제명과 시행일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PP 11 정비법이 성립함.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외에, 저작권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새로운 제도, 전송 음원의 이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 부여, 손해배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TPP 11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부터 시행될 예정임.

배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12 협정’)은 2015년 10월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고, 2016년 2월 체결됨.
- 그리고 제192회 국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TPP 12 정비법’)이 2016년 12월 9일 성립하고, 같은 달 16일에 공포됨.
-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이 TPP 12 협정 탈퇴를 선언함. 그 때문에 미국 이외의 11개국이 합의하여 2018년 3월 8일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에 관한 포괄적·선진적 협정’(이하 ‘TPP 11 협정’)이 체결됨.
- 그 후 제196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TPP 11 정비법’)이 2018년 6월 29일 성립하고, 같은 해 7월 6일 공포됨.
 - TPP 11 정비법은 TPP 12 정비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TPP 12 정비법의 시행일을 TPP 11 협정이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

-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저작권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개정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1>
- 또한 실연이나 레코드 저작물 보호기간을 실연이 행해진 후 50년 또는 레코드 발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2>

○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 중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함.
- 일정 요건은 ① 대가를 얻을 목적 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을 것, ② 유상저작물<3>을 ‘원작 그대로’ 양도·공중 송신하는 침해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유상저작물을 복제하는 침해 행위일 것, ③ 유상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임.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만화 등의 동인지를 코미케(コミケ)에서 판매하는 행위나 만화 패러디를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친고죄의 대상인 한편, 판매 중의 만화·소설책의 해적판을 판매하는 행위나 만화 해적판을 인터넷 전송하는 행위는 비친고죄의 대상임.

○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제도 정비(접근 통제 회피 등에 관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제113조 제3항, 제119조 제1항, 제1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접근 통제 기능만을 가진 보호 기술을 기술적 보호 수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개정 저작권법은 종전의 기술적 보호 수단에 더해 접근 통제 기능만을 가진 보호 기술도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 수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4>함과 함께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 회피 장치 판매 등의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함.

○ 전송 음원의 이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 부여(저작권법 제95조 제1항)

- 방송사업자 등이 CD와 같은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음.

<1> 저작자 불명·변명(變名)이나 단체 명의의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2>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개정 전부터 공표 후 7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3> 유상저작물은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함.

<4>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개정 전 저작권법에는, CD와 같은 상업용 레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전송되는 음원(전송 음원)을 이용해 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없었음.
- 개정 저작권법은 위의 사용료 청구권 대상을 확대하고, 전송음원을 이용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청구권을 부여함.
-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재검토(저작권법 제114조 제4항)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 침해된 저작권이 저작권관리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이 해당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거해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의 손해액에 관한 규정은 침해물의 수량 × 정품의 이익,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에 더해 사용료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시행기일
 - 이러한 개정 사항은 TPP 11 협정이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5>부터 시행될 예정임.

평가

-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 수단의 적정화, 민사상 또는 형사상 권리 행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은 TPP 11 참가국 간에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권리 행사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wQNo4E>

<https://bit.ly/2oNq9oI>

<https://www.cas.go.jp/jp/tpp/index.html>

<5> TPP 11 협정은 협정 서명국 중 6개국 또는 반수 이상의 국가가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함(TPP 11 협정 제3조).

일본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검토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라이선시의 권리 중에는 대항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나 라이선서가 파산·도산한 경우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대상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을 설치하고, 라이선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

⚖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 설치

-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에 관한 워킹팀’(著作物等のライセンス契約に係る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チーム)(이하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을 설치하고,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대항제도’(著作物等の利用許諾に係る権利の対抗制度)(이하 ‘라이선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
- 라이선스 계약 WT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우선 라이선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그 후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문제의 소재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계약)의 이용자(라이선시)는 저작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작권의 양수인에 대해 해당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항할 수단이 없음.
- 또한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라이선서가 파산·도산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1>}

<1> 라이선서가 파산·도산하여 파산절차가 개시한 시점에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시는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을 우려가 있음.

- 즉, 현행 법제도에서는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파산한 경우에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라이선스를 전제로 한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검토 사항

-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은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도입 및 그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첫째,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 설계
 - 2017년 문화청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라이선스 계약 중에 라이선서가 제삼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사례나 라이선서가 파산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례와 관련해, 라이선서가 양수인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 추가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었음.
 - 위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으로서는 현재 라이선스 계약에 대신해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방식의 대응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양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는 라이선스의 지속적인 저작물 이용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2>
 - 라이선스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음. 라이선스는 사전에 저작권의 이전이나 저작권자의 파산을 알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라이선스의 본질적 권리 즉,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양수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항제도 도입은 라이선스의 저작물 이용 금지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다만 양수인은 대항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는 것, 양수 시점에 해당 저작권의 이용 허락 여부를 알 기회가 있으므로 리스크의 내부화가 가능하다는 것, 양수인이 라이선스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대항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에서 대항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본적으로 대항제도의 도입은 라이선스의 보호와 양수인의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예컨대, 저작권의 일부 양도에 의한 대응은 저작권자의 심리적 저항감으로 인해 일부 양도의 합의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의 세분화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가 불명확하다는 것,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음.

- 현재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①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등록대항제도), ②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한 사업실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사업실시대항제도), ③ 악의의 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악의자대항제도), ④ 대항요건 없이 당연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당연대항제도)가 논의되고 있음.<3>

○ 둘째,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승계

-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제도 설계 시에는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의 승계를 상정한 제도도 생각할 수 있음.

-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승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라이선스 계약 승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에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나아가 해석상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에 수반하여 계약의 당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어떠한 합의를 하면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지를 논의함.

○ 셋째, 저작권 분야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 라이선스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제도 설계 시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저작권관리사업, 출판권제도, 서브라이선스 등 저작권 분야의 다른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향후 검토 사항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있어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과 같은 물권적 이용권이 출판권 이외에 존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라이선스는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독점적인 이용을 기대하는 라이선스가 제삼자가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은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법 법리와의 정합성, 제도 도입이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정합성, 저작권자의 의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해하지 않도록 독점적 라이선스에게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참고 자료**

<https://bit.ly/BaVrjy>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89.pdf

<3> 등록대항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염려, 악의자대항제도나 사업실시대항제도에 대해서는 입증의 부담·곤란성 등에 관한 염려가 있음.